

# NEWSLETTER 891

NOV 30, 2023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입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 연장 -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15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므로 아래 안내 참고하시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하시길 바랍니다.

### I. 개정 이유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인 포장 김치, 젓갈류 등 미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두 등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II. 주요 내용

#### 1.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 연장 (제37조)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현 행	개 정
<p>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p> <p>① 영 제 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의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 <u>분류표(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u>에 따른다.</p> <p>② (생 략)</p>	<p>제3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p> <p>① ----- ----- <u>분류표(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 2. 기한 연장 대상 수입 미가공식품품 (별표1 제12호)

구분	HS CODE	대상 항목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품품	0409	① 천연꿀
	0410	②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1212	③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
	2501	④ 관세율표 제25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소금
	1209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관세율표 제1209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채소 종자 ⑦ 쌀에 인산추출물·아미노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쌀을 분쇄한 후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다시 알곡모양을 낸 것은 제외한다), 쌀의 함량이 90퍼센트 이상인 것

## III. 의견제출

### 1. 제출기한

- 2023년 12월 15일

### 2. 제출방법

(1)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2) 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cinepara@korea.kr](mailto:cinepara@korea.kr)

○ 전화 : 044-215-4322, 4326

○ 팩스 : 044-215-8068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26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붙임2] (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Contact



유다예 관세사

T 070-4353-1588  
E dyyoo@esein.co.kr



김재우 팀장

T 070-4353-1522  
E jwkim@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